

이사회 규정

제1조 (목적)

본 규정은 주식회사 현대바이오랜드(이하“회사”라 한다.) 이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

법령 또는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 (구성 및 권한)

-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(사외이사 기타 비상무이사 포함)으로 구성한다.
- ②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,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- ③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.
- ④ 이사회는 회사창립 및 발전에 공로가 있으며 회장 및 이사를 역임한 분에 대하여 회사의 대외 활동 및 경영에 대한 조언을 위해 명예이사로 추대할 수 있다.

제3조의 2 (성 립)

이사회는 이사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.

제3조의 3 (임 기)

- ①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그러나 그 임기가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된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한다.
- ② 사외이사의 총 연임기간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4조 (의 장)

- ①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.

②이사회 의장이 유고시에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대행한다.

제5조 (결의사항)

① 이사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.

(1)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
1. 주주총회의 소집
2. 영업보고서의 승인
3. 재무제표의 승인
4.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

(2) 법령상 이사회 결의사항

1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2. 이사의 타회사 임원겸직에 관한 사항
3. 이사, 주요주주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
4.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
5. 사채의 발행
6. 자산재평가에 관한 사항

(3) 정관상 이사회 결의사항

1. 지점 및 사업장의 설치, 이전, 폐지
2. 종류주식의 배당률, 존속기간
3. 신주발행 사항
4. 관련법령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와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하는 결정
5. <삭 제>
6.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
7. 이사 및 감사위원의 수의 결정
8. 대표이사의 선임과 이사의 직위 결정
9.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, 운영 및 폐지
10. 주주총회에서 특별히 이사회에 위임한 사항
11. 기타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사항

(4) 회사경영에 관한 중요사항

1. 사업계획
2. 국내외 주요 신규 투자계획
3. 그 외 회사 경영상 중대한 재무, 비재무적 리스크

비재무적 리스크는 경영 관련 리스크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, 탄소중립, 자원순환 등 환경적 리스크와 안전보건, 인권, 지역사회 등 사회적 리스크를 포함한다.

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
2.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
3.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
4.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제6조 (소집통지)

- ① 이사회 소집통지는 회의개최일 1주일전에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(이하 “감사위원”) 전원에게 서신, 전자우편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하고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- ② 이사 및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제1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6조의 2 (소집권자)

- ①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.
- ② 의장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대행순서에 의한다.

제6조의 3 (소집청구)

- ① 각 이사는 이사회 의장 또는 그 밖의 소집권자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고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때 이사회 의장은 즉시 이사회를 소집한다. 의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회의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회의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다.

- ② 이사회 소집 요청은 적어도 회의개최일 10일전까지 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.

제7조 (결의방법)

-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. 단, 관련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- ②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당해 안건에 관하여 결의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7조의 2 (관계인의 의견청취)

이사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경영진, 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8조 (종 류)

-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한다.
- ② 정기 이사회는 매 분기마다 이사회 의장이 통지한 장소에서 개최한다. 단, 필요한 경우 개최시기 및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.
- ③ 임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9조 (이사회 내 위원회)

-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 - 1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 - 2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
3.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
4.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
-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 단,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-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- ⑤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
제10조 (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)

- ① 이사회는 각 이사 및 경영진이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사 및 경영진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경우, 이사회는 당해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제11조 (이사회 의사록)

-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 반대한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- 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.

제12조 (사외이사 지원)

- ① 사외이사는 이사회 등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인력의 지원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, 사외이사가 이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한다.
- ② 회사는 이사회 참석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외이사에게 음식물/선물, 교통비/출장비, 수당/사례비 등을 제공하며, 이사회 참석 및 운영과 관련

하여 발생하는 경비를 부담한다.

제13조 (위임)

이사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에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.

제14조 (긴급집행)

- ①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사전 집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대하여 이사회가 긴급집행을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조치는 장래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한다.

제15조 (이사의 의무)

- ① 이사는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경영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며, 회사의 비밀을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된다.
- ② 이사는 이사회의 사전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.
- ③ 이사는 이사회의 사전승인이 없는 한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할 수 없다.
- ④ 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.

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사항

<2021년 3월 29일 제정>

이사회 규정 제 13 조에 의거 다음의 각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결정 및 집행을 위임함

1. 건별 자본금 50% 미만의 차입
2. 수출입 관련 무역 금융 및 지급보증 회전한도 설정
3. 어음할인, 매입 및 어음거래 약정
4. 자본금 10% 미만의 출자 또는 주식의 매입 및 매각
5. 자금운용을 위한 유가증권(주식을 제외)의 매입 및 매각
6. 기승인된 투자사업 또는 PROJECT에 관련한 소요자금의 차입 및 지급보증
7. 거래금액이 자본금 10% 미만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자금, 자산의 거래 또는 임대차
8. 기존 보증 및 기존 차입의 기간 연장
9. 기타 상법,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회사의 일상업무

부 칙

1. 본 규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본 규정은 2015년 12월 19일부터 제1차 개정하여 시행한다.
3. 본 규정은 2017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4. 본 규정은 2020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.
5. 본 규정은 202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6. 본 규정은 202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7. 본 규정은 2021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8. 본 규정은 2022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9. 본 규정은 2022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.
10. 본 규정은 2023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.
11. 본 규정은 2023년 3월 20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.